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67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이달희·배준영·최은석·조경태·임미애·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3

Ⅰ. 개요

1.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06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19.

(3) 회 부 일 : 2024. 9.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이달희·배준영·최은석·조경태·임미애·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안 제71조의2 신설) ○ 요건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채 신규 취득 * 주택 소재지, 주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 1개 보유한 경우 포함) ○ 취득기한 - 2024. 1. 4. ~ 2026. 12. 31. (배준영·정태호의원안·정부안) - 2024. 1. 4. ~ 2028. 12. 31. (최은석의원안) ○ 신청절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배준영·최은석의원안) -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정태호의원안·정부안)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정태호의원안·정부안) 공포한 날 (배준영의원안) 공포 후 1년 경과 (최은석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배준영의원안 2024. 7. 9. 발의(의안번호 1541), 최은석의원안 2024. 8. 2. 발의(의안번호 2539),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현 행	개정안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9조의4)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추가
○ 1세대가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건설취득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등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전 일반주택 양도 시에도 허용하나, 3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 (현행과 같음)
- 농어촌주택	- (현행과 같음)
· ①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소재, ② 취득당시 주택·토지가액 합계액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 고향주택	- (현행과 같음)
· ① 고향 소재, ② 수도권지역, 조정대상지역, 관광단지 외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소재 ③ 취득당시 주택·토지가액 합계액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추가 · 3년 이상 보유 요건 제외 · 기존 주택과 신규취득 주택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경우 적용 제외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임미애의원안 2024. 9. 19. 발의(의안번호 4067)

현 행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달희의원안: 안 제71조의2 신설 조경태의원안: 안 제70조의3 신설) ○ 요건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채 신규 취득 * (이달희의원안)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1개 보유한 경우 포함 - 기존 1주택과 신규 취득 1주택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닐 것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주택 범위(제8조제2항)	□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포함
○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 (현행과 같음) ○ 인구감소지역주택 추가 (이달희의원안) - 기존 1주택과 신규 취득 1주택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닐 것 -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일 것 ○ 인구감소지역주택 추가 (조경태의원안) -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제외
○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달희의원안 2024. 7. 1. 발의(의안번호 1224, 1249), 조경태의원안 2024. 9. 9. 발의(의안번호 3808, 3814)

□ 9건의 개정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배준영·최은석·정태호 의원안과 정부안은 제71조의2를 신설하면서 주택 소재지, 주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①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하고, ②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4억원으로 제한하며, ③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취득은 제외한다는 계획임.[1)]

배준영·정태호의원안과 정부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기한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말까지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최은석 의원안은 2028년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절차에 있어서 3건의 개정안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신고기간을 두고 있음.

임미애의원안은 제9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다만,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과는 달리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 7. 25.

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보유기간 요건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과 신규취득 주택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달희·조경태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3(조경태의원안) 또는 제71조의2(이달희의원안) 신설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포함시키고 있음.

다만,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의 공시가격, 취득기한 등의 제한이 없다는 점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일 것(이달희의원안)을 요한다는 점에서 배준영·최은석·정태호의원안 및 정부안과 차이가 있음.

□ 2023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전년에 비해 11만3709명(△0.22%) 줄어들어,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이래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4년~2023년 성별 인구수 및 전년대비 증감 현황]

(단위: 명)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인구	5,133만	5,153만	5,170만	5,178만	5,183만	5,185만	5,183만	5,164만	5,144만	5,133만
남	2,567만	2,576만	2,583만	2,586만	2,587만	2,586만	2,584만	2,575만	2,564만	2,557만
증감	80,960	88,890	69,408	28,325	10,210	△1,313	△2,787	△94,345	△109,733	△71,215
여	2,566만	2,577만	2,587만	2,592만	2,596만	2,599만	2,599만	2,589만	2,580만	2,576만
증감	105,493	112,532	97,470	54,003	37,305	25,115	2,949	△95,869	△90,038	△42,494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2024.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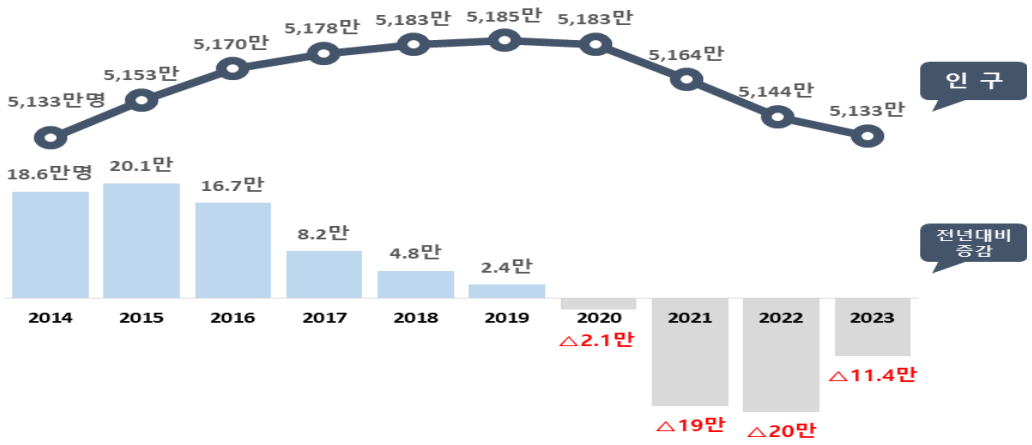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2024.1.10.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973만명으로 18.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인구는 22년말 대비 5.00%p 늘었고, 70세 이상 인구는 22년말 대비 3.91%p 늘어남.

[2014년~2023년 고령(65세 이상) 인구수 및 비중 추이]

(단위: 명, %)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65세 이상	652만 (12.70)	678만 (13.15)	700만 (13.53)	736만 (14.21)	765만 (14.76)	803만 (15.48)	850만 (16.39)	885만 (17.14)	927만 (18.02)	973만 (18.96)
70세 이상	444만 (8.65)	458만 (8.89)	476만 (9.20)	501만 (9.67)	524만 (10.12)	548만 (10.57)	570만 (11.00)	582만 (11.28)	608만 (11.82)	632만 (12.31)

※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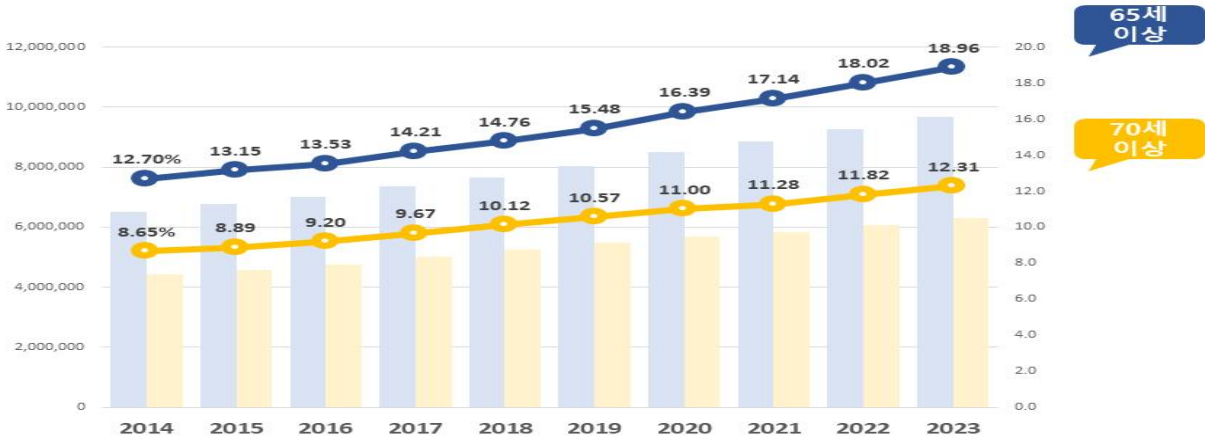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2024.1.10.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26.10%), 경북(24.68%), 전북(24.11%), 강원(23.99%), 부산(22.63%), 충남(21.34%), 충북(20.85%), 경남(20.60%) 등 8곳은 초고령사회에 해당되고 있음.

[2022년 및 2023년 시·도별 고령 인구 현황]

(단위: 명, %)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23년	173만 (18.47)	75만 (22.63)	47만 (19.64)	50만 (16.58)	23만 (16.48)	24만 (16.97)	18만 (15.92)	4만 (11.01)
‘22년	166만 (17.59)	71만 (21.47)	44만 (18.43)	46만 (15.63)	22만 (15.58)	23만 (16.09)	16만 (14.75)	4만 (10.48)

구 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3년	212만 (15.57)	37만 (23.99)	33만 (20.85)	45만 (21.34)	42만 (24.11)	47만 (26.10)	63만 (24.68)	67만 (20.60)	12만 (17.94)
‘22년	199만 (14.66)	35만 (22.77)	32만 (19.87)	44만 (20.58)	41만 (23.20)	46만 (25.17)	62만 (23.78)	64만 (19.47)	12만 (1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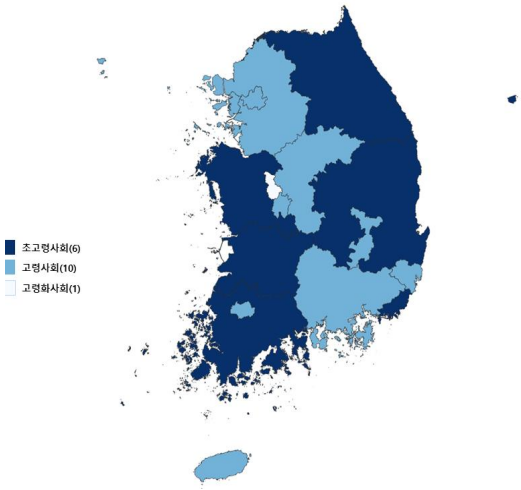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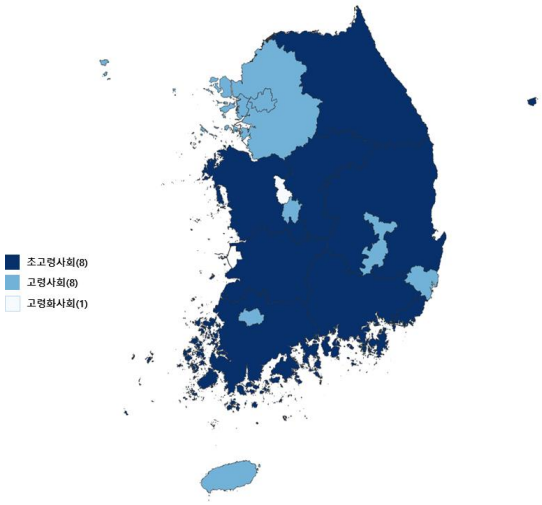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2024.1.10.

권역별로 비교해보면, 2023년 수도권 인구는 2601만4265명(50.69%), 비수도권 인구는 2531만1064명(49.31%)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 보다 70만3201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

[2014년~2023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수 및 비중]

(단위: 명, %)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수도권	2,536만 (49.41)	2,547만 (49.43)	2,559만 (49.50)	2,568만 (49.60)	2,580만 (49.78)	2,593만 (50.00)	2,604만 (50.24)	2,602만 (50.39)	2,599만 (50.52)	2,601만 (50.69)
비수도권	2,596만 (50.59)	2,606만 (50.57)	2,611만 (50.50)	2,610만 (50.40)	2,603만 (50.22)	2,592만 (50.00)	2,579만 (49.76)	2,562만 (49.61)	2,545만 (49.48)	2,531만 (49.31)
격 차 (수도권 - 비수도권)	△60.1만	△58.8만	△51.5만	△41.9만	△23.1만	0.2만	24.8만	40.8만	53.1만	70.3만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등 3곳, 비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외 14곳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2024.1.10.

□ 한편, 2023년 6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에서는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3]·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면서,[4] 동법 시행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5]

이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 89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동 고시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마다 다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2) 2020년 12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지원하도록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으나, 2023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폐지하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3) 특별시 제외 /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③ (생략)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	개수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3개
대구	남구, 서구	2개
인천	강화군, 옹진군	2개
경기	가평군, 연천군	2개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12개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6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9개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0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16개
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6개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개
합 계		89개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제2021-66호)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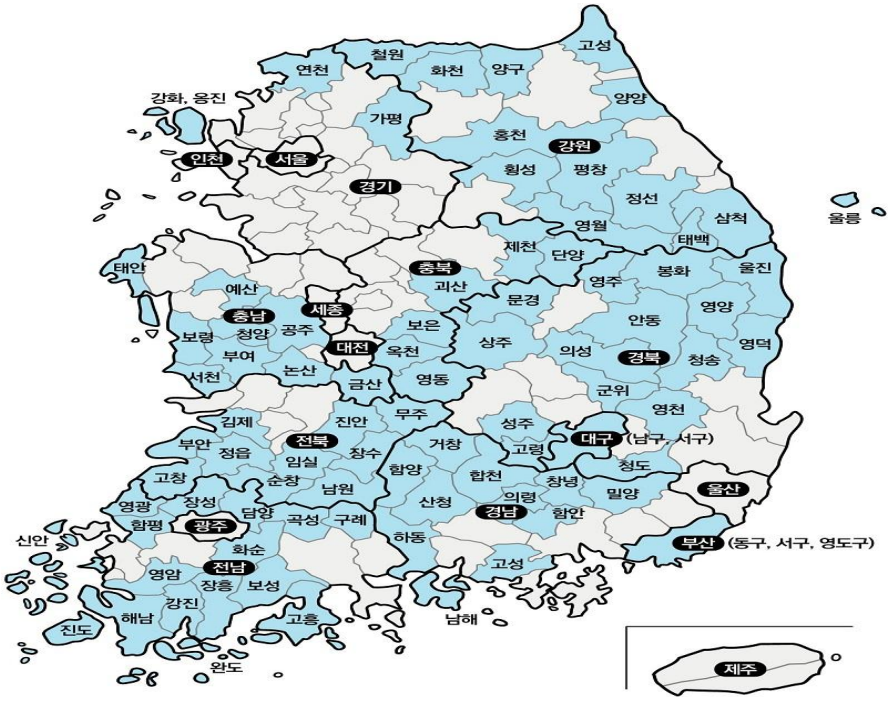

□ 9건의 개정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6] 유입을 통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2023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1만4265명으로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반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비율은 전체 인구의 9.4%에 불과하지만 국토면적은 59.5%에 해당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 및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하므로[7]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유입된 인구들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둘째, 기존 1주택자의 세컨드 홈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최근 삶의 여가 시간이 중요해지면서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찾기 위한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재산세, 종

6)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재외동포거소신고자 포함)', '등록지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월 1회 이상 방문자' 모두를 말함.

7) 「데이터로 보는 인구감소지역」, 국회도서관, 2023. 6. 7.

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주택의 추가 매입으로 인한 세부담이 큰 제약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소재 세컨드 홈 구입에 대한 세제상 특례 도입을 통해 도심지역을 벗어나 주말이나 휴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인구감소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요건 없이 세제혜택을 통해 수도권 등의 도시 인구 유입을 추진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인구감소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산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2주택자의 절세방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발 호재가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가격 제한이 없을 경우[8] 수도권 거주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제도의 정책효과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셋째, 인구감소지역의 거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8) 정부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배준영·최은석의원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위임하고 있으나, 이달희·임미애·조경태 의원안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가격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음.

시행 중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등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9],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택 신축·개수·보수 관련 비용 지원[10],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우대조치[11]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들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 중에 있음.

---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 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1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관련 특례]

분야	특례 내용
산업·일자리 (1건)	국가 및 지자체는 **중소기업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판로개척**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주거·교통 (6건)	국가 및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개수 등 비용 지원** 가능
	지자체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 목적으로 이전하는 개인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허용**
	국가 및 지자체는 유치원, 학교,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우선 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섬 지역 교통편의를 위해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요금 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어촌 등에 **교통서비스 지원 가능**
보육 (3건)	국가 및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및 **무상임대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행·재정적 지원 가능**
의료 (4건)	국가 및 지자체는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지역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설치,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
	국가 및 지자체는 응급, 심혈관, 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지원 가능
	시·도지사는 의료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 가능**
문화 (5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박물관미술관법」에도 불구, **학예사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국가 및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 및 이전하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해 **순회 문화공연, 전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가능
	문체부장관은 문화,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 지원 가능**

분야	특례 내용
교육 (11건)	시·도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의 시설 및 교원 등 **통합 운영** 및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시·도 교육감은 학교 등을 **폐교**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
	시·군·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드는 **경비 보조 가능**
	교육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교부금법」의 교부금 지원 가능**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프로그램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방과후 과정**, 돌볼활동 등) **운영 가능**하며, **시·도 교육감**은 **행·재정적 지원 가능**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다만, 사립학교는 제외)에 대한 **설립 기준, 인가 특례 부여 가능**
	교육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행·재정적 지원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지방대학에 대해 교원, 교육용 시설 등「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의 **재학생·졸업생**에게 **임용, 채용 등에서 지원 강화**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그 외 (6건)	행안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공동 시책 추진** 등을 위해 **협약 체결 가능**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비자)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특례 부여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노후·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지자체는 **유휴시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로 그 활용범위를 확대 가능**
	기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 주민 역량강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청년·중장년·장애인·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문 의 처
02)6788-5157